

#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칙

**GS SHOP**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칙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주관)

시청자위원회의 운영 및 규칙 제·개정은 대외협력팀에서 주관한다.

## 제3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,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시청자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,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.

## 제4조 (위원 선정)

-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.
- ②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한다.  
후보자 공모 결과 후보자가 없는 분야가 있거나 후보자 수가 너무 적은 경우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  
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후보자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④ 시청자위원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준법지원인 또는 컴플라이언스팀이 포함된 6인 이상의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.  
구성 시 역할은 아래 직무와 같다.

- 위원장 : 대외부문장
  - 위원 : 대외협력팀장, 컴플라이언스팀장, 홍보팀장, 심의팀장,  
디지털컨텐츠전략팀장
- ⑤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분야, 전문성, 연령,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- 관련 분야에 충분한 경력을 보유하신 분
  - 시청자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신 분
- ⑥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-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
  -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 
(교육 공무원, 법관 제외)
  - 정당법에 의한 당원
  - 당사 상품판매 관련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### 제5조 (권한과 직무)

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.

-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②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
- ③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

## 제6조 (운영)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, 대외협력팀 주관하에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- ②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는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, 시청자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제7조 (당사 의무)

- ①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②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- ③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 제8조 (예산 집행)

- ① 시청자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시청자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### 제1조 (시행일)

- ① 이 규칙은 2017. 09. 01일 제정. 시행한다.
- ② 이 규칙은 2018. 10. 01일 개정. 시행한다.